『대순사상논총』 제58집 (2026), pp.291~321
https://doi.org/10.25050/jdaos.2026.58.0.291

일제의 종교 경계와 정교분리 잣대의 불일치
- 신앙 단체의 상반된 3·1운동 참여 태도에 대한 인식과 정책 대응 -

이 원 섭 *

■ 국문요약

본 연구는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일제가 설정한 종교와 종교유사단체의 경계 및 정교분리의 기준이 실제 신앙 단체들의 참여 태도와 어떻게 불일치했는지를 밝히고, 이에 대한 일제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을 살핀다. 1915년 「포교규칙」을 통해 일제는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공인종교로 규정하고, 그 외의 자생적 신앙 단체들은 공인종교의 여집합인 종교유사단체로 분류하는 법적 경계를 세웠다. 일제는 3·1운동 만세시위 이후 통치 기조를 전환하며 종교 관련 정책을 다각도로 개선했으나, 기존 종교/종교유사단체의 경계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비공인종교가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고 혹세무민하며 민족 독립 문제에 결부된다고 보면서도 이를 공인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았으며, 치안 관리 차원에서 모든 신앙 단체를 양태에 따라 방관·감시·탄압의 방식으로 관리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신앙적 뿌리를 공유하는 단체들('개신교와 천주교', '천도교와 시천교')의 상반된 3·1운동 참여 태도는 종교 공인 경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종교 행정을 담당하던 일제

*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E-mail: wonbbv@snu.ac.kr

관료들은 통치 관리 차원에서 신앙 단체 간 참여 양상의 차이와 그 원인을 면밀히 탐구하였다.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 나카라이 키요시(半井清), 히라야마 마사주(平山政十) 등 종교과 관료와 재조일본인 연구자들의 저술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총독부는 선교사들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도, 개신교와 달리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지 않는' 천주교의 순응적 태도를 명확히 구별하여 인식했다. 아울러 천도교와 시천교가 역사적으로 정치적 열망을 분출해 온 궤적의 차이를 파악하고, 집회·결사의 허용 수준을 조율하며 종교유사단체의 동향에 따라 방관·감시·탄압을 적절히 구사하는 관리 방식을 취했다.

본 연구가 조명한 일제의 종교 인식과 정책 대응의 변화 과정은, '공인종교/비공인종교'라는 이분법적 틀에 가려져 있던 역사적 실상을 보다 명료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주제어 : 3·1운동, 종교유사단체,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 개신교와 천주교, 천도교와 시천교

Ⅰ. 들어가며
Ⅱ. 종교 경계 설정과 정책 판단
Ⅲ. 개신교·천주교, 천도교·시천교 차이 탐구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본 연구는 일제가 스스로 설정한 종교 경계와 정교분리 기준이 불일치하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주목하여, 3·1운동 전후로 나타난 일제의 정책적 태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은 일제시기 한국 종교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진행할 때, 각 종교별 입장에서 일제의 종교 정책에 대응해 온 양상을 밝히는 데 집중해 왔다.[1] 당시 일제의 정책 의도는 주로 관련 법령 텍스트를 통해 파악되곤 했다. 「보안법」(1907), 「사찰령」(1911), 「경학원규정」(1911), 「사립학교규칙」(1911), 「경찰범처벌규칙」(1912), 「포교규칙」(1915)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은 법령들이 일제의 주요한 통제 방식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일제의 입장이 법령 문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폭넓게 탐구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정책의 입안 취지, 총독부 관료들의 관련 담화, 종교 정책 연구

1) 종교별 입장에서 일제의 종교 정책을 주제로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新宗教」,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pp.72-103;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서울: 경인문화사, 2001);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7);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서울: 경인문화사, 2003); 안유림, 「일제하 기독교 통제법령과 조선기독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서, 법령 적용 사례 등은 정책 시행의 맥락과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1919년 3·1운동 전개 과정에서 동일한 신앙적 뿌리를 공유하는 단체들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는 점은, 일제가 정책 변화를 꾀할 때 신앙 단체 간의 차이를 재인식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2] 이것이 바로 본 연구가 3·1운동 참여 양상이 상반되었던 '개신교와 천주교', '천도교와 시천교'에 대해 일제가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했는가를 면밀히 탐구해 보고자 하는 이유이다.

일제의 종교 정책은 한마디로 종교를 조선총독부 통제하에 두는 '공인교 정책'이었다.[3] 1915년 「포교규칙」이 공포·시행되면서 종교와 '종교유사단체',[4] 곧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의 구분이 법제화되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연구자들은 이 명료한 이분법을 바탕으로 '공인종교는 통제와 회유', '비공인종교는 감시와 탄압'이라는 일제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연관 지어 해석해 왔다. 다만 명문화된 법제가 현실에 적용될 때 어긋남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각 신앙 단체는 공인종교로서 누리는 '혜택'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결사로서 받는 '탄압'이라는 양극단 사이에서 일제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로 공인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일제의 정책상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이 담긴 다음의 서술은 민족운동사의 관점에서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지점을 잘 보여준다.

---

2) 본 연구에서는 종교 관련 단체 일반을 지칭하는 용어로 '종교 단체' 대신 '신앙 단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일제의 종교 경계에 대한 논의 속에서 지시하는 대상에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함이다.

3) 일제 스스로 제도적으로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를 구분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종교과 관료였던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는 "조선에서의 종교는 이를 제도상으로 구분하면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의 구별이 있다."고 설명한다. 渡邊彰, 『朝鮮に於ける宗教の狀況』 (조선총독부, 1921), p.1. 다만 그들의 정책을 '공인교 정책'이라 규정한 것은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 정립된 학술적 명명이다.

4) 언론이나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유사종교'라는 표현이 통용되나, 1930년대 이전까지 일제가 실제로 사용했던 명칭은 '종교유사단체'였다. '종교유사단체'와 '유사종교'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박인규, 「일제강점기 식민당국의 신종교 정책의 추이 : '종교유사단체'와 '유사종교'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47 (2024), pp.1-47 참조.

> 총독부 당사자는 **유사종교에 대하여 종교로서 육성하지도 않고 또 처음부터 금지하지도 않고 '받은 방침은 없었다.'** 그것이 민족주의 정치운동이 되고 지방 치안을 해치고 혹은 금품의 사기 혹은 살해사건 등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경찰이 사건으로써 단속하였다. 그 교의 내용에 미신행위가 많기 때문에 경무당국의 탄압에 대하여는 조선인 지도계급이 지지하였다.[5](강조는 필자)

일본 정부는 1945년 패전 이후 대장성(大藏省) 관리국을 통해『일본인의 해외활동에 관한 역사적 조사(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라는 보고서를 간행했다. 위 인용문은 보고서의 조선편에 서술된 식민지 종교 정책 중 '유사종교'에 대한 방침을 정리한 내용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일제가 취한 비공인종교에 대한 방침은 통제와 회유 혹은 감시와 탄압이 아닌 '방관'에 가까웠다. 조선총독부에서는 공인종교 외의 신앙 단체를 종교로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신앙 단체를 해산시킬 목적으로 감시와 탄압을 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정책 법령 조문이 역사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듯이, 이 또한 패전 직후의 일본이 정리한 식민지 조선의 종교 정책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다만 이 자료는, 공인종교/비공인종교라는 이분법적인 틀에 가려져 있던 역사적 실상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분명히 시사해 준다.

종교 정책과 관련된 역사상을 명료히 그려내는 작업은 2000년대 이후로 계속 축적되어 왔다. 특히 제국사적 관점에서 식민지 조선과 제국 일본 간 정책 구상의 연쇄 관계를 고려하는 작업은, 복잡한 정책사적 흐름을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한 연구 성과이다.[6] 또한

---

5) 김승태 편역,『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 기독교편, 1910~1945』(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p.405. 김승태는 다음 문헌을 번역・수록하였다. 일본 대장성 관리국 편,『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통권 제4책 조선편 제3분책 (1947), pp.58-88.

6) 안유림은 일제 종교정책사 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제국사적 관점에서 진행된 고마고메 다케시(駒込武), 아오노 마사아키(青野正明)의 성과와 함께, 윤해동・이소마에 준이치・장석만 등 한일 학자들이 공동 작업한『종교와 식민지 근대』(2013)을 소개한다. 안유림,「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한국문화연구』32 (2017), p.242, p.268.

개별 종교 중심을 벗어나 일제시기 종교정책사를 면밀히 분석한 연구[7]와, ‘종교유사단체’ 및 ‘유사종교’ 개념을 중심으로 신종교 정책의 시기별 차이에 주목한 연구[8]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흐름은 개별 종교에 대한 접근을 넘어 일제 종교 정책의 큰 틀을 조망하고, 법제화 전후로 정책이 구상되고 시행되는 맥락과 시기별 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9]

본 연구도 역시 이러한 선행 연구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지만, 특히 종교 경계가 흔들리는 3·1운동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 공인종교 및 비공인종교 각각에 속한 신앙 단체들이 3·1운동에서 서로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는 점은, ‘정교분리’의 태도를 기준으로 삼은 일제의 종교 경계 설정이 현실과 괴리되었음을 드러낸다. 공인종교인 개신교와 천주교, 비공인종교인 천도교와 시천교가 바로 그 사례가 된다. 이들 신앙 단체를 향한 일제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식민당국의 태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제의 종교유사단체 인식을 검토하여 종교 공인 여부를 어떠한 근거로 판단했는지를, 『조선총독부시정연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문서, 치안상황 문서 등 조선총독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일제 관료와 재조일본인이 저술·편찬한 자료를 통해,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 틀 내에서 개신교와 천주교, 천도교와 시천교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심화되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

7) 고병철,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서울: 박문사, 2019);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1).

8) 박인규, 앞의 글.

9) 대표적인 예시로 ‘유사종교해산령’을 들 수 있다. 1930년대 전시체제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서술되어 왔으나, 이는 연구자들의 서술을 통해 사후적으로 실체화된 측면이 강하며, 실제 유사종교에 대한 탄압과 해산은 구체적인 법령 없이 이루어졌다. 권동우,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에 관한 연구: ‘무극도(無極道)’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44-4 (2021), pp.41-78.

Ⅱ. 종교 경계 설정과 정책 판단

1. 3·1운동 이전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제의 종교 정책에서 종교와 종교가 아닌 것의 구분은 1915년 「포교규칙」에서 명문화된다. 다만 제1조에 "본령에 종교라 칭함은 신도(神道), 불교와 기독교(佛敎及基督敎)를 말"한다고 밝혔을 뿐, 어떠한 이유로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종교라 규정하였는지 「포교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10] 따라서 조선총독부가 종교 경계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단서는, 그 이전의 정책 구상에서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관련 자료가 이미 다뤄졌지만, 논의에 필요한 작업이므로 간략히 검토하면서 그 단서를 추적해 본다.

가장 먼저, 1906년 통감부령 제45호로 공포된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이다. 제1조에서 "제국 내의 신도, 불교, 기타 종교에 속하는 교종파(帝國ニ於ケル神道佛敎其ノ他宗敎ニ屬スル敎宗派)"로 언급하고 있어, 일본 내에 있는 종교에 대한 간략한 범주 인식을 보여준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해당 법령이 일본인의 조선 포교 활동을 규정한 것이었기에 '조선' 및 '외국' 종교에 대한 범주 인식까지는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이다.[11] 둘째는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총독의 유고(諭告)이다. 「한일병합조약」 체결 직후에 발표된 것으로 '신교(信敎)의 자유' 문제를 다루고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정사에 간섭하여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해치면 법적으로 다스리겠지만, 본래의 목적대로 "인심세태(人心世態)의 개선(改善)"에 집중한

10) 「府令」, 『朝鮮總督府官報』 제911호, 1915. 8. 16.
11) 고병철,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p.63; 박인규, 앞의 글, p.4.

다면 “유불 제교와 기독교(儒佛諸敎與基督敎)” 모두 포교 활동에 편의를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었다.[12] 해당 유고에서 공인 대상으로서의 종교 범주를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사적인 영역’으로 종교를 한정하려는 의도만큼은 분명히 드러난다.[13] 마지막으로, 1911년도 『조선총독부시정연보』에 실린 ‘종교취체(宗敎取締)’ 항목을 들 수 있다. 조선인의 종교로 천도교, 시천교, 대종교 등을 나열하고,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여 순연한 종교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 많아 단속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다.[14]

앞의 세 가지 자료에 담긴 종교 이해를 종합해 보면, 일제는 종교 범주를 뚜렷하게 설정하지 않았지만, 모름지기 종교란 정치적인 일에 관여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며, 사회 형편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조선에서 등장한 신앙 단체들에 대해서는 정치적 색채를 띠는 것이 태생적 특성이라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었다. 1912년도 『조선총독부시정연보』에서는 새로 창설된 대동자유기독교회(大東自由基督敎會)를 언급하면서, 조선인이 운영하는 종교는 ‘정치와 종교를 혼동’한다는 기조로 종교취체 항목을 서술하였다.[15] 또한 ‘집회결사의 취체’ 항목에서는 ‘종교유사(宗敎類似)’에 해당하는 단체로 경천교(敬天敎)를 거론하며, 창교자를 “조선인의 미신을 조장한 자(鮮人ノ迷信ヲ煽揚シタル者)”로 묘사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특성을 덧붙였다.[16] 그밖에 1913년 경무총감부(警務總監部)에서 작성한 자료에서도 조선인의 종교가 “정치의 부패에

12) 「諭告」, 『朝鮮總督府官報』 제1호, 1910. 8. 29.; 고병철,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p.70.

13) 김승태,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2017), p.33.

14)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1 (1913), p.77; 김승태,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 p.33; 박인규, 앞의 글, p.6.

15)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2 (1914), p.100. 다만 다음 단락에서 조선불교와 내지불교의 포교 현황을 함께 서술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찰령」 시행 이후 조선불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식이 자리 잡아 갔다고 볼 수 있다.

16)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2, p.96.

서 일어난 것이 많"다고 보는 인식이 확인된다.[17]

1915년 「포교규칙」이 공포되는 시점에서도 조선인이 창설한 신앙 단체는 신앙을 내세운 정치 조직이자 허황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집단이라는 인식이 여전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포된 「포교규칙」은 '외국인의 종교'인 기독교와 조선에 전래되어 온 불교만을 공인하고, 그 외 '조선의 종교'는 정교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 단체로 간주한 것이다. 그럼에도 법령상으로는 제15조를 통해 '종교유사의 단체' 역시 '신도', '불교', '기독교'와 같이 공인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18] 실제로 1920년대 초에 천도교를 「포교규칙」의 적용을 받는 신앙 단체로 공인하려 한 움직임이 확인되므로,[19] 조선의 자생 신앙 단체들을 포섭하기 위한 전적인 기만 전략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과적으로 일제말기까지 실제로 공인된 단체는 전무했으므로, 제15조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정이었다.[20]

여기서 명확히 구별해야 할 지점은, 종교유사단체가 '종교에 준하는 단체'로 인가되는 것과 비밀결사 상태의 신앙 단체가 '종교유사단체'로 승인받는 것은 서로 성격이 달랐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

17) 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건으로, 박인규가 논문에서 이를 소개하였다.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併合第三週年ト高等警察』(1913), p.114; 박인규, 앞의 글, p.8.

18) "第十五條 朝鮮總督ハ必要アル場合ニ於テハ宗教類似ノ團體ト認ムルモノニ本令ヲ準用スルコトアルヘシ", 「府令」, 『朝鮮總督府官報』 제911호, 1915. 8. 16.

19) 3·1운동 전후 조선군사령관이었던 우츠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는 천도교를 회유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신앙 단체를 '공인'하는 방향을 구상하기도 했다. 다만 이는 비공식적인 구상에 그쳤을 뿐 실제 정책으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당시 일제 조선군과 조선총독부 경무국 경찰 사이에 입장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츠노미야 타로의 종교 인식에 관해서는 고마리, 「3·1운동 전후 조선군사령관 우츠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의 종교 인식과 종교인 관계: 『우츠노미야 타로 일기』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56 (2026), pp.257-291 참조.

20) 1940년에 편찬된 『시정30년사』에서 당시 제7대 미나미 지로(南次郎) 총독 시기의 종교 현황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조선에서 공인(公認) 종교는 신도(神道)·불교·기독교의 3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게다가 그 밖에 종교 유사 단체라고 할지라도 이를 지정하여 종교로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는데, [844] 시정(施政) 이후 아직 공인된 것은 없다." 오다 쇼고,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박찬승 외 옮김 (서울: 민속원, 2018), p.1315. []의 숫자는 해당 번역서에서 원본의 쪽수를 표시한 것이다.

이, 신도, 불교, 기독교와 같이 「포교규칙」의 적용을 받는 '종교에 준하는 단체'로 종교유사단체를 공인한 사례는 일제시기에 없었다. 한편 일부 문헌에서 보천교, 동학교 등이 종교유사단체로 공인 혹은 인가되었다고 기술한 사례는, 바로 후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생각된다.[21] 요컨대 「포교규칙」 공포를 통해 확립된 종교 경계는 법령상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며, 종교 혹은 종교에 준하는 단체로 공인받지 못한 신앙 단체는 정치에 관여하거나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포교규칙」 공포 이후 조선의 자생 신앙 단체들이 일제의 종교 정책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를 살펴보면, 두드러진 변화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3·1운동 이전까지 데라우치 총독의 시정 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보안법」과 「경찰범처벌규칙」 등으로 치안상 우려가 있는 집회와 결사를 엄중히 단속했지만, 천도교나 시천교처럼 교세를 갖춘 신앙 단체들의 교단 운영은 지속되었다. 이는 「포교규칙」 시행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포교규칙」은 공인된 종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 규정이었다. 즉, 향후 정착되는 '종교유사단체'라는 표현은 공인된 '종교' 이외의 단체라는 "여집합"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22] 일제는 비공인종교에 정치

21) 일본 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우방문고(友邦文庫)에 소장된 전라북도 도청에서 작성한 비밀문건인 「무극대도교개황」을 보면, 1920년 말 종교유사단체로 공인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는 실제 『조선총독부시정연보』와 비교했을 때에도 신빙성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22년도에 발간된 1921년도 시정연보에서부터 종교유사단체 명단에 보천교가 거론되기 시작한다. 해당 자료에 대한 해제는 박상규, 「무극도 관련 문헌 연구: 비교 및 고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1 (2022), pp.32-35 참조. 상주 동학교의 경우, 부교주 하암 김낙세(金洛世)의 일기에 1922년 일제로부터 교단 개교를 인가받기 위해 노력했던 정황이 서술되어 있다. 3·1운동 이후 일제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수면 아래에 있었던 조선 자생 신앙 단체들이 수면 위로 부상하였다. 동학교의 인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때의 인가는 동학교가 '종교유사단체'로 인가된 것이지 '종교에 준하는 단체'로서의 지위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하암일기의 묘사에 따르면, 교단의 주요 행사가 거행될 때 지방 경찰 순사가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는 동학교가 일제의 허용 영역 안에 있음을 나타냄과 동시에 '불온한 움직임'에 대비한 감시 또한 병행되었음을 보여준다. 김낙세와 하암일기에 관한 내용은 박병훈, 「상주 동학교 김낙세의 하암일기 연구: 동학교 의례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95 (2024), pp.107-140 참조.

적 행동을 벌이거나 사람들을 현혹하는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수식어를 붙였지만, 이는 역으로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별다른 탄압 없이 신앙 단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했다. 신앙 단체의 조직적 참여로 전개된 3·1운동 이후에야 '종교유사단체'에 대한 일제의 관심과 정책적 태도가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 3·1운동 이후

독립선언 계획을 천도교와 개신교 지도자들이 주도했던 만큼, 3·1운동 만세시위가 전국으로 확산·전개되는 과정에서 총독부는 시위와 신앙 단체의 관계를 주시하였다. 특히 주목할 점은 동일한 신앙적 뿌리를 공유하는 단체들이 서로 상반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이다. 일제는 전국적인 만세시위를 통제하면서 시위자의 소속 종교를 함께 파악하였으므로, 조직적 참여의 양적 차이는 당시 수감자 통계를 통해 뚜렷이 확인된다. 흔히 인용되는 1919년 6월 30일 기준의 만세시위 수감자 통계를 보면, 개신교인과 천도교인이 각각 약 21.46%와 15.44%에 달했던 반면, 천주교인과 시천교인은 각각 0.6%와 0.05%에 불과했다.[23] 이는 천주교인과 시천교인의 참여가 얼마나 저조했는지를 한

22) 박인규는 종교유사단체의 개념을 "'종교'인 신도·불교·기독교 외의 여집합으로서 '종교'와 유사한 모든 단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자체에 어떤 특성이 있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무엇과 비슷한 나머지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또한 1910년대에도 종교유사단체에 대해 유화적인 정책이 시행되었고, 1920년대에 종교유사단체의 수가 급증한 사실 역시 이를 방증한다고 파악하였다(박인규, 앞의 글, pp.11, 13, 17). 이를 염두에 둘 때, 일제가 '종교유사단체'를 종교와 유사하지만 종교에 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단체로 규정하면서도 실제 이들을 어떠한 위상으로 파악했는지는 여전히 모호한 경계에 놓여 있었다. 이는 종교와 유사한 것으로 간주해 두는 일종의 '가승인' 상태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들 신앙 단체는 제도상 공인종교의 범주에 들지 못한 채, 일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언제든 감시와 탄압을 받으며 불온 단체로 취급받을 수 있는 처지였다.

23) 이는 조선총독부의 통계이다. 수감자 9,458명 중 개신교인은 2,030명, 천주교인은 57명이었고, 천도교인은 1,461명, 시천교인은 5명이었다. 「密 第102號 其371/朝鮮騷擾事件報告月報 第1號」, 『大正8年乃至同10年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 共7冊 其4』, 朝鮮總督府→長谷川好道(朝鮮總督) 외, 1919년 7월 31일자 발신,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d/jssy_004_0220, 2026. 7. 24. 검색).

눈에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양상은, 1919년 6월 각 도(道)의 3·1운동 상황을 취합하여 일본 헌병대장·경무부장 연석회의에 보고서 형태로 제출된 『조선소요사건상황(朝鮮騷擾事件狀況)』[24]을 통해서도 확인된다.[25] 경기도에서는 "천주교·구세군 및 시천교(侍天敎)는 거의 초연한 태도를 가지고 방관하였다"고 보았고,[26] 경상남도에서는 "천주교·유사종교·시천교(侍天敎)가 있으나, 천주교는 전연 무관계"라고 판단했다.[27]

천주교와 시천교가 3·1운동 참여에 부정적 태도를 보인 이유는 일제의 통치에 순응하면서 '정교분리'의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시천교 포덕사 김기현(金基鉉)은 《매일신보(每日申報)》에 투서한 글에서 "조선 독립을 선언한 자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여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이미 일본과 조선이 한 가족이 된 화목한 상황을 깨지 말라고 주장했다.[28] 당시 시천교 최고 지도자였던 송병준 역시 한일병합 찬성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선 민중이 차별받지 않는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진정한 실현을 주장했을 뿐, 조선 독립을 찬성하지 않았으며 교단 차원의 종교적 발언 또한 없었다.[29] 천주교 역시 정치적인 문제에 철저히 거리를 두었다. 윤선자는 『조선소요사건상황』에 기록된 각 도별 천주교 선교사들의 태도를 종합 검토하여,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도, 함남 등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만세시위에 관여하

24) 『독립운동사자료집 6: 삼일운동사자료집』에 번역문이 수록되었다.

25) 해당 자료에 기록된 천주교인 및 시천교인의 태도는 선행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윤선자,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천주교회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9 (2020), pp.5-48; 이원섭, 「종교 연구자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의 저술 활동: 1920년대 초 학무국 종교과 근무 시기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55 (2025), pp.323-349.

26)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騷擾事件狀況」,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6: 삼일운동사자료집』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3), p.596.

27) 같은 책, p.612.

28) 김기현, 「妄動은 自取滅亡, 永興侍天敎布德師 金基顯」, 《每日申報》 1919. 3. 16.

29) 송병준, 「所感」, 內田良平 편, 『朝鮮統治問題に就て先輩並に知友各位に訴ふ』 (1920), pp.55-59. 해당 내용은 일본 용계서사(龍溪書舍)에서 한국병합사자료(韓国併合史研究資料) 시리즈로 발간한 복간본을 참고하여 인용하였다.

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였으며, 신도들에게 '종교와 정치는 구별해야 한다'고 훈계했던 정황을 분석해 냈다.[30] 특히 해당 보고서에 수록된 평안남도 시찰 결과는, 당시 일제 치안 담당자가 신앙 단체 및 정치 결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 원래 기독교와 천도교는, 종교로서 양자가 일치 제휴할 것이 못된다. 오히려 본도에 있어서도 평소에 서로 반목 질시해 온 많은 사례가 있다. 그런데 이번의 운동이 양자가 서로 제휴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은, **종교적 입각지(立脚地)를 떠난 정치적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양자가 각기 종교적 가면 아래, 일대 정치적 결사를 형성한 사실은 오직 이번 운동만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기왕에도 그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본다. 요컨대 양자는 민중을 규합하기 쉽고, 그 사상을 유도하기 편리한 종교의 선포에 편승하여, 일부 불평분자가 어떤 목적을 위해 형성한 일대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한편으로는 양자가 모두 종교로서 상당한 역사적 기초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매우 공고한 단체**인 만큼, 이번의 운동을 가지고 바로 정치 결사라고 규정하여 처치하는 것은 아직 그 시기가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31](강조는 필자)

가장 두드러지는 시각은 공인종교인 기독교(개신교)와 비공인종교인 천도교의 지위를 동등하게 보았다는 점이다. 보고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두 단체가 제휴하여 조직적인 만세시위를 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종교적 입장을 떠난 정치 운동'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두 단체를 곧바로 정치결사로 규정하지는 않았는데, 개신교와 천도교

30) 朝鮮憲兵隊司令部, 앞의 책, pp.704-731; 윤선자,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천주교회의 3.1운동」, pp.25-26. 비록 소수였으나 10대부터 60대에 이르는 농민, 학생, 교사, 상인 등 여러 계층의 천주교 신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3·1운동에 참여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경성교구장 뮈텔 주교와 대구교구장 드망즈 주교를 비롯한 대다수 성직자가 만세운동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였다. 이 때문에 일제가 일부 신자의 만세운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교도권을 지닌 성직자들의 공식 입장을 근거로 한국천주교회의 태도를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선자,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천주교회의 3.1운동」, p.23, pp.28-29.

31) 朝鮮憲兵隊司令部, 앞의 책, pp.614-615.

모두 역사적 배경과 깊은 신앙을 지닌 “종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종교/종교유사단체 혹은 공인종교/비공인종교의 법제적 구분이 결정적인 잣대로 작용하지 않았다. 즉, 공인 여부와 무관하게, 식민지 치안 관리의 차원에서는 해당 조직의 정치적 참여 유무와 의도를 한층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의 전개는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의 취임, ‘문화 통치’로의 기조 전환, 학무국 종교과 설치 등의 정책 변화로 이어졌지만, 종교 공인의 대상이 변경되는 일은 없었다. 이는 신앙 단체가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지 않는 ‘순연한 종교’여야 한다는 인식이 일제의 치안 관리상의 이유에 불과했을 뿐, 실제 종교 공인의 본래 의도와 목적은 이와 달랐음을 보여준다. 신도, 불교,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하여 정책적 통제하에 육성하고, 민족 및 독립 문제와 결부될 가능성이 농후한 조선 자생 신앙 단체들은 방관하거나 교세가 큰 단체는 경계하며 관리하는 방향을 취한 것이다. 다만 신앙 단체가 거국적 정치 운동의 주역으로 부상했던 만큼, 학무국 종교과를 통해 ‘종교유사단체’에 대한 조사와 면밀한 파악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1922년에 간행된 1918-1920년도 『조선총독부시정연보』에서는 종교 항목을 ‘재래의 종교’, ‘내지 각 종파의 포교’, ‘기독교’로 나누어 서술했고, ‘재래의 종교’는 ‘조선 고래의 종교’인 불교와 ‘종교유사단체’로 구분하여 신앙 단체 파악의 체계성을 높였다.[32] 특히 종교유사단체를 네 범주로 구분하는 유형화가 시도되었는데, 학무국 종교과 신설 이후 이곳에서 근무한 관료들의 연구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33]

공인종교, 특히 개신교와 천주교에 대한 정책 변화 또한 학무국 종교과의 주요 업무였다. 3·1운동 이후 설치된 학무국 종교과는 “종

32)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8~1920 (1922), pp.144-147.

33) 대표적인 인물로 1920~1922년에 종교과 1등 관등 속(屬)으로 근무한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를 들 수 있다. 시정연보가 1922년에 간행된 점을 감안하면, 종교유사단체의 유형화가 시도된 그의 1921년의 연구 성과가 시정연보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渡邊彰, 『朝鮮に於ける宗教の狀況』 (1921). 해당 연구의 분석은 이원섭, 앞의 글, pp.333-337 참조.

교행정을 중시하고 사회교화라는 임무수행을 원조한다는 방침"에 따라, 3·1운동의 '소요'를 야기했던 개신교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급선무로 처리했다.[34] 여러 관료들이 종교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종교과장으로 부임한 나카라이 키요시(半井清),[35] 종교과 1등 관등 속(屬)이었던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 학무국 소속 촉탁으로 종교에 관한 사무를 맡았던 요시카와 분타로(吉川文太郎)[36] 등이 1920년대 초 종교 실태를 분석하고 일제의 종교 정책을 구상하며 학술 조사를 진행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나카라이 키요시를 대표로 하여 1921년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朝鮮の統治と基督教)』가 발간되었는데, 이후 1923년에 개정 4판을 간행할 만큼 당시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다. 조선총독부는 이 책의 발간을 통해 일제의 정책이 반기독교적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37]

1920년 3월과 4월에 단행된 「개정사립학교규칙」 및 「포교규칙」의 개정 조치는 종교계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였다. 종교 의식과 종교 교육을 가로막던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종교 시설 설립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복잡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되고 벌금형 규정 역시 폐지되었다.[38] 그러나 두 규칙의 개정 조치가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조선총독부의 사립학교 통계를 보면, 학교 수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학생 수는 1920년에 2배로 증가한 이후 정체되었다.[39] 한편 교회 설립 규정의 완화는 개신

34) 이충호 편역, 『조선통치비화』 (서울: 국학자료원, 2012), pp.273-274.
35) 나카라이 키요시는 일제의 내무관료이자 정치가로, 1919년 10월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장에 취임했다. 임이랑, 「1920년대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의 설치와 역할」, 『역사문제연구』 24-2 (2020), p.61.
36) 조선총독부 직원록에 따르면, 요시카와 분타로는 1921년부터 1923년까지 학무국 소속 촉탁으로 종교에 관한 사무를 맡았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자료」 (https://db.history.go.kr/modern/jw/level.do, 2026. 7. 24. 검색).
37)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統治と基督教』 (京城: 朝鮮總督府, 1923), p.1.
38) 고병철,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과 종교 법규」, 『정신문화연구』 40-2 (2017), p.25.
39)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pp.210-211.

교에만 실질적인 혜택으로 작용하였는데, 천주교의 교회 수가 1920년에서 1921년 사이에 4개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장로교회는 115개, 감리교회는 57개나 급증했다.[40] 이와 같은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정책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일제 정책에 저항하지 않도록 회유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겼다고 평가된다. 특히 교회 재산의 재단법인화는 일제로부터 재산을 보호받게 해 주는 한편, 외국인 선교사들이 일제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되었다. 개신교와 달리, 3·1운동 만세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던 천주교에 대해 일제 당국은 통치에 방해를 주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41] 어떤 신앙 단체보다 빠르게 경성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이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것은 이와 같은 흐름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42]

아울러 주목할 점은, '문화 통치'로의 정책 변화에 따라 집회·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었을지라도 민족 독립을 주장하는 정치 운동을 벌이거나 황당무계한 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정도가 심한 단체는 공인종교/비공인종교와 상관없이 엄중히 단속하는 기조를 유지했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조선총독부 경무국이 간행한 1922년도 『조선치안상황(朝鮮治安狀況)』에서는, 당해에 결사 해산과 집회 중지 및 해산 처분을 내린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 의식이나 사회적 불만을 고취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신교 계열 단체인 애우회(愛友會) 해산, 천도교 포교 연극 중지 및 연극단 해산, 청주 불교 강연회 중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43] 또한 「경찰범처벌규칙」에 따라 '신앙의 비행'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도 공인종교와 비공인종교의 구분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44] 즉, 공인종교 소속이라 하여 그들의 신앙적 치

40) 같은 책, pp.210-211.

41) 같은 책, p.220.

42) 물론 이 조치의 대상에 '종교유사단체'는 해당하지 않았다. 종교과장 나카라이 키요시는 「포교규칙」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조선인 각교'는 법인 신청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종교 선포와 法人 許可, 조선인의 各教에는 無關, 半井宗教課長談」, 《每日申報》 1920. 5. 9.

43) 朝鮮総督府警務局, 『大正11年 朝鮮治安狀況』 (1922), pp.142-149.

유 행위를 특별히 합당한 것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3·1운동의 전개는 새로운 총독의 취임, 통치 기조의 변화, 학무국 종교과 신설, 종교 관련 법제 개정 등 대대적인 정책 변화를 야기했지만, 종교/종교유사단체의 경계를 변하게 하는 일은 없었다. 일제는 종교유사단체가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고, 황당무계한 설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민족 독립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특성 자체를 종교 공인 여부의 기준점으로 삼지는 않았다.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조선총독부 통제하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육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순전한 종교인가 아닌가와 상관없이, 종교유사단체는 공인종교의 여집합으로 규정되었으며, 치안 문제에서는 모든 신앙 단체를 그 양태에 따라 방관·감시·탄압의 방식으로 관리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신교와 천도교, 천주교와 시천교가 보인 상반된 입장은 일제의 종교 경계 범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신앙 단체 관리 차원에서 일제 관료들은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는가에 대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다.

Ⅲ. 개신교·천주교, 천도교·시천교 차이 탐구

3·1운동 이후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천도교와 개신교는 일제의 주요 관찰 대상이 되었다. 종교 대책에 대한 일제의 입장을 나타내는 다음의 문장이 그 대응 방식을 잘 대변해 준다.

---

44) 渡邊彰, 「信仰に由來する非行の概觀」, 『警務彙報』 198 (1921년 11월호), pp.60-61. 와타나베는 1912~1920년의 통계를 정리하였는데, 사행 현혹에 관한 비행을 저지른 자는 공인종교 소속 709명, 비공인종교 소속 1,283명이었고, 의료 방해에 관한 비행을 저지른 자는 공인종교 소속 284명, 비공인종교 소속 700명으로 집계하였다.

> 독립소요의 수뇌들 중에는 **기독교・천도교 신자가 많았기 때문에** 용의선상에 오른 이들 신자들에게 엄중한 취체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관헌과 양 종교 사이에 수많은 오해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양자 간의 소원한 감정은 내정 상 또 장차 대외관계 상 수 많은 불리한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천도교는 종교 유사단체로서 경무국 관할**에 속하여 취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관제개정 후 학무국에 특별히 1과로서 종교과가 설치된 관계로 여기서 종교 문제를 관할**하도록 했습니다.[45](강조는 필자)

위에서 설명한 종교 대책과 같이, 천도교는 공인받지 못한 '종교유사단체'로서 경무국의 관할하에 취체를 받았고, 기독교는 공인받은 '종교'로서 신설된 학무국 종교과에서 관할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기독교라 언급하였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개신교가 그 대상이었다. 종교 관련 사무를 담당하던 일제 관료들은 3・1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천도교, 개신교와 달리, 동일한 계통의 교단인 시천교와 천주교가 왜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았는가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문을 품게 되었다. 1920년 전후로 발간된 와타나베 아키라의 『천도교와 시천교(天道教と侍天教)』(1919), 나카라이 키요시가 서문을 쓴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1921), 천주교인이었던 히라야마 마사주(平山政十)의 『만세소동과 가톨릭교(萬歲騷動とカトリック教)』(1930) 등이 이와 같은 문제의식의 결과물이다.

『천도교와 시천교』는 와타나베 아키라가 천도교와 시천교의 분립과 성격을 주제로 행한 강연 대본을 출간한 것이다.[46] 3・1운동 직후 천도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그는 1919년 4월 두 단체의 역사적 연원과 만세운동에 대한 상반된 태도의 원인을 분석하는 강연을 실시했다. 이후 강연 대본의 간행을 바라는 주변의 요청이 잇따르면서, 1919년 11월 이를 단행본으로 간행하게 되었다. 와타나베가 서

45) 이충호 편역, 『조선통치비화』, p.273.
46) 구체적인 내용은 이원섭, 앞의 글, pp.329-333 참조.

언에서 밝혔듯이, 그는 시천교가 천도교와 같은 교조를 받들고 동일한 경전을 계승하면서도 3·1운동에는 가담하지 않은 경위를 규명하고, 나아가 향후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품고 있었다.[47] 와타나베가 강연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표현은 '정치와 종교의 혼동(政治と宗教の混同)'이었다. 동학사에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주요 계기로는 동학농민운동, 일진회 활동, 3·1운동을 들 수 있다. 와타나베는 천도교와 시천교의 분열이 교리적 갈등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혼동'에서 기인했다고 진단하였다.[48] 요컨대 시천교는 주도적으로 참여한 일진회 활동이 1910년 한일병합으로 귀결되면서 정치적 열망이 체제와 조화를 이루게 된 반면, 천도교는 그렇지 못했기에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며 3·1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49]

일제는 천도교와 시천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에도 주목하였다. 당시 발간된 본격적인 기독교 연구서 가운데 대표적인 저술로는 1921년 조선총독부가 펴낸 『조선의 통치와 기독교』를 들 수 있다. 초판 서문을 쓴 학무국 종교과장인 나카라이 키요시가 주저자로 생각된다. 1921년 초판 발행 이후에 3쇄까지 증쇄되었으며, 1923년 3월에는 개정 4판이 출간될 정도로 널리 읽혔다. 나카라이가 중판 서문에서 밝혔듯이, 개정판에 새로운 자료를 더하지는 못했지만 통계표를 최신화하고 부록의 내용을 추가하였다.[50] 본서의 목차 구성을 보면, 1910년 한일병합 전후 조선의 기독교 역사를 개괄하면서 기독교와 관련된 일제의 종교 정책과 외국인 선교사들의 비판적 시선을 담

47) 渡邊彰, 『天道教と侍天教』 (京城: 大阪屋號書店, 1919), p.4.

48) 渡邊彰, 『天道教と侍天教』, p.26.

49) 같은 책, pp.44-45.

50)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統治と基督教』, p.2. "중판에 부쳐: 이 책의 중판에 즈음하여 가능한 한 새로운 자료를 더하고 싶었으나, 사무의 여가에는 생각처럼 되지 않아 통계표를 최근의 것으로 바꾸고, 부록 안에 두세 가지를 추가하는 데 그치기로 한다. 나는 이 작은 책이 중판됨으로써 조금이라도 조선에서의 기독교의 윤곽을 아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은근히 기쁘게 생각한다."

아내고 있다.[51]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 활동에 주목한 본 저서는, 조선인의 민족적 감정과 외국인 선교사의 시선이 얽히면서 일제의 통치가 '기독교의 박해'를 겨냥하고 있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의 기독교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사실에 근거하여 틀림없는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편찬되었다.[52]

특히, 본 저서의 부록에 실린 4편의 글에는 개신교 선교사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노력을 선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부록에 수록된 문건은 1920년, 1921년, 1922년에 개최된 기독교연합대회에 참석한 정무총감과 학무국장의 담화문 3편 및 「전선선교사연합대회진정서(全鮮宣教師聯合大會陳情書)」[53]로 구성되어 있다. 1920년에 시바타 젠자부로(柴田錬三郎) 학무국장은 진정서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통해 총독부와 개신교의 입장이 서로 이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교사 여러분과 당국과의 회합은 서로 호의를 가지고 매우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54] 1921년에 미즈노 렌타로(水野錬太郎) 정무총감은 개신교 측의 요구사항을 다수 실행에 옮겼으며, 선교사와 일제 당국은 "조선인의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협력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55] 1922년 새로 부임한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 정무총감은 선교사들에게 식민 통치의 종교 방침을 설명하면서, 모든 종교에 대해 편견을 갖지는 않겠지만, 통치 기조에 입각한 종교 평가는 지

51) 같은 책, p.1.

52) 같은 책, p.1.

53) 본 진정서는 1919년 9월 29일자로 미국 남·북감리교, 미국 남·북장로교, 호주장로교 및 캐나다 장로교 등 6개 선교단 연합회가 합동으로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3·1운동과 기독교」, 『한민족독립운동사 9: 3·1운동이후의 민족운동 2』(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에서 설명하고 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hdsr_009_0040_0040_0020, 2026. 7. 24. 검색).

54)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統治と基督教』, pp.45-47.

55) 같은 책, pp.39-44.

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56] 일련의 담화문은 조선총독부 관료들이 천주교 선교사들과의 관계에 공을 들인 것 못지않게, 개신교 선교사들과도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대화의 자리를 기피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문헌은 1930년에 간행된 히라야마 마사주[57]의 『만세소동과 가톨릭교』[58]이다. 이 책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약 10년 후에 저술되었지만, 천주교인의 만세시위 참여가 저조했던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천도교와 시천교를 비교했던 와타나베 아키라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토 총독과 육군 소장 마에다 노보루(前田昇)의 글이 서문으로 수록된 점을 미루어 볼 때, 3·1운동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이에 대한 고찰은 일제의 조선 통치 정책에서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토 총독은 본 저서가 "대정8년의 독립 소요에 비추어, 당시 조선의 10만 가톨릭 교도 중 단 한 명도 이러한 민족의식 발로의 정치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그 원인을 설명하고, 가톨릭교의 본질과 특징 등을 명확히 하여 해당 교도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한다.[59] 마에다도 서문에서 "소요의 와중에 있으면서 종시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가톨릭 교도가 아닌 한 해내기 어려운 일"이라 술회하였다. 아울러 자신이 당시 경무총감부 고등경찰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56) 같은 책, p.38.

57) 히라야마 마사주는 1880년 나가사키 출생으로 경성에서 목장과 우유 관련 사업에 종사했다. 가톨릭 신자로서 프랑스어와 조선어에 능통했다. 1930년대 말에는 만주국의 촉탁으로 현지 가톨릭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平山政十, 『萬歲騷動とカトリック教』(東京: カトリック教報社, 1930), pp.5-6. 그는 1931년 『殉教血史 日本二十六聖人』이라는 가톨릭 영화를 제작하기도 하였는데, 본 저서의 발간을 통해 일제 고위 인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내세워 영화 제작 후원을 받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히라야마 마사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조규태, 「일제강점기 돈암리 이주민 히라야마 마사쥬(平山政十)와 平山牧場」, 『숭실사학』 46 (2021), pp.113-136 참조.

5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참고하였으며, 해당 자료는 온라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주윤정의 해제가 함께 제공된다.

59) 平山政十, 앞의 책.

밝히며, “가톨릭 교도들의 동향은 참으로 감탄할 만한 것이었다”고 평가했다.[60] 또한 히라야마가 머물렀던 “동소문 외 돈암리(東小門外敦岩里)에는 끝내 소요가 일어나지 않았던 점”도 언급하며 감사 인사를 기록했다.[61]

저서의 목차를 살펴보면, 크게 ‘만세소동과 가톨릭교(萬歲騷動とカトリック教)’와 ‘가톨릭교의 인생관(カトリック教の人生觀)’이라는 두 개 부제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저자는 천주교인이 개신교인과 달리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보존하고 주권에 복종할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천주교의 신앙이야말로 식민지 조선 문제 해결의 실마리라고 보았다. 또한 천주교인은 정치적으로 ‘경거망동’하거나 일제의 통치에 반항하기보다는,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인간사를 신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인생관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62] 즉, 이러한 신앙관을 갖추었기에 3・1운동 당시 천주교인들이 별다른 동요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본 저서 전반부는 히라야마가 사이토 총독을 찾아가 가톨릭 신앙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던 일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적이다. 히라야마는 조선의 ‘10만 가톨릭 신자들’이 3・1운동 당시 통치권에 복종했다는 사실과 함께, 가톨릭에서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엄격히 가르치고 있음을 총독에게 피력하고, 총독이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하여 감격했던 경험을 상세히 서술하였다.[63]

이상 살펴본 연구서들은 조선총독부 관료와 재조일본인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3・1운동의 적극적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천도교와 시천교’, ‘개신교와 천주교’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일제가

60) 같은 책, pp.4-5.

61) 같은 책, p.6. 서문 이후 본문의 쪽수는 다시 1부터 시작됨.

62) 주윤정, 「해제」, 『萬歲騷動とカトリック教』 (국립중앙도서관 제어번호: KUO000015224, https://www.nl.go.kr/korcis/search/popup/abstractsInfo.do?controlNo=KUO000015224, 2026. 7. 24. 검색).

63) 平山政十, 앞의 책, pp.6-29. 전반부는 총 8개 장의 소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히라야마가 사이토 총독을 찾아가 가톨릭 신앙을 설명했던 일화가 핵심을 이룬다.

어떻게 인식하고 식민지 조선의 종교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가를 잘 보여준다. 즉, 조선총독부는 천주교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개신교와 달리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지 않는' 천주교의 태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인식했다. 반면 천도교와 시천교에 대해서는 교단사적 맥락을 검토하여, 두 단체 내부에 잠재된 정치적 열망이 분출된 시기가 서로 달랐던 것으로 파악했다. 억눌림이 과할수록 임계점 이후의 폭발력은 그만큼 강할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일제가 집회·결사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1920년대에 종교유사단체와 종교 관계 단체의 수가 폭증했음에도 방관·감시·탄압의 방식을 병행하며 적절히 관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신앙 단체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본다.

Ⅳ. 나가며

본 연구에서는 1919년 3·1운동을 전후하여 일제가 설정한 종교와 종교유사단체의 경계, 그리고 정교분리의 기준이 실제 신앙 단체들의 3·1운동 참여 태도와 어떻게 불일치했는지, 이에 대해 일제가 어떠한 인식과 정책적 대응을 보였는지를 살폈다. 1915년 「포교규칙」을 통해 일제는 신도, 불교, 기독교만을 공인종교로 규정하고, 그 외의 자생적 신앙 단체들은 공인종교의 여집합인 종교유사단체로 분류하는 법적 경계를 세웠다. 일제는 3·1운동 만세시위를 겪으면서 통치 기조의 변화와 함께 종교 관련 정책을 다각도로 개선했지만, 기존에 설정한 종교/종교유사단체의 경계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일제는 비공인 종교에 1) 정치와 종교를 혼동, 2) 황당무계한 설을 통한 미혹, 3) 민족 독립 문제에 관심 등의 특성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이를 종교 공

인 여부의 절대적 기준점으로 삼지는 않았다. 오히려 치안 관리의 차원에서 모든 신앙 단체를 그 양태에 따라 방관・감시・탄압의 방식으로 관리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개신교와 천주교', '천도교와 시천교'가 보인 상반된 3・1운동 참여 태도는 종교 공인 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만 종교 행정을 담당하던 일제 관료들은 통치 관리의 차원에서, 3・1운동 참여 양상에 나타난 신앙 단체 간의 차이와 그 원인을 면밀히 탐구하였다. 와타나베 아키라, 나카라이 키요시, 히라야마 마사주 등 종교과 관료와 재조일본인 연구자들의 저술이 바로 그 결과물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천주교 및 개신교 선교사 모두와의 관계 개선을 꾀하면서도, 개신교와 달리 '종교와 정치를 혼동하지 않는' 천주교의 순응적 태도를 명확히 구별하여 인식했다. 아울러 천도교와 시천교가 역사적으로 정치적 열망을 분출해 온 궤적의 차이를 파악하고, 집회・결사의 허용 수준을 조율하면서 종교유사단체의 동향에 따라 방관・감시・탄압을 적절히 구사하는 관리 방식을 취했다.

일제의 종교 정책은 「포교규칙」에 명문화된 이분법적 틀(공인/비공인)에만 얽매여 일률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일제는 종교유사단체를 규정하면서 '정교분리'를 표면적인 잣대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식민 지배의 안정과 치안 유지라는 목적 아래 신앙 단체의 현실적 정치 행보에 따라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대처했던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일제의 입장은 법령 문구 자체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며, 정책을 고민하고 구상하는 과정 전반을 통해 폭넓게 탐구될 수 있다.[64] 본 연구에서는 '일제'라는 포괄적인 지칭을 사용하여 식민 권력의 입장을 단일하게 서술하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64) 또한, 본 연구의 문제의식에 근대 '종교개념론'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면, 한층 심화된 이론적 분석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 근대의 산물인 '종교' 범주가 제국 일본을 거쳐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는 과정에서 탈정치화된 내면적 신념 체계로 규정된 맥락에 주목할 때, 식민 권력이 종교 범주를 매개로 피식민 사회를 어떻게 통치해 나갔는지를 더욱 입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되어야 할 연구 과제이다.

경무국, 경무국 경찰과 조선군 사이에 관점의 차이가 존재했을 것이며, 시기별, 인물별 종교 인식 또한 다층적이었을 것이다.[65] 특히 학무국 종교과가 신설된 이후 이곳에 소속되어 활동한 일제 관료들이 1920년대에 활발하게 종교 관련 저술을 남겼다는 점에서, 그들의 활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룬 저작 외에도, 『조선(朝鮮)』, 『조선급만주(朝鮮及滿洲)』, 『경무휘보(警務彙報)』 등 총독부 기관지에서 종교과 관료들의 글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는 아직 연구자들의 손길이 닿지 못한 상태이다. 향후 일제시기 종교 정책의 구상과 시행 과정, 그리고 종교에 대한 식민 권력의 인식을 탐구하는 데에 조선총독부 관료들의 저술을 중심으로 연구가 한층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65) 아울러 신앙 단체에 대한 더욱 폭넓은 탐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못했으나, 3·1운동에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했던 조선불교계나 신도(神道) 및 일본불교를 둘러싸고 어떠한 정책적 움직임과 변화가 있었는지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제가 '공인종교'로 분류된 대상들에 대해 정교분리의 잣대가 아닌 어떠한 현실적 논리로 정책적 판단을 내렸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每日申報》

『朝鮮總督府官報』

『朝鮮總督府及所屬官署職員錄』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1, 1913.

_____,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2, 1914.

_____, 『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8-1920, 1922.

朝鮮総督府警務局, 『大正11年 朝鮮治安狀況』, 1922.

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高等警察課, 『□□併合第三週年ト高等警察』, 1913.

朝鮮總督府 編, 『朝鮮の統治と基督教』, 京城: 朝鮮總督府, 1923[1921].

朝鮮憲兵隊司令部, 「朝鮮騷擾事件狀況」,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자료집 6 : 삼일운동사자료집』, 서울: 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3.

渡邊彰, 『天道教と侍天教』, 京城: 大阪屋號書店, 1919.

_____, 「信仰に由來する非行の槪觀」, 『警務彙報』 198 (1921년 11월호).

_____, 『朝鮮に於ける宗教の狀況』, 조선총독부 1921, 서울대학교도서관본.

송병준, 「所感」, 內田良平 편, 『朝鮮統治問題に就て先輩並に知友各位に訴ふ』, 1920.

平山政十, 『萬歲騷動とカトリック教』, 東京: カトリック教報社, 1930.

고마리, 「3·1운동 전후 조선군사령관 우츠노미야 타로(宇都宮太郎)의 종교 인식과 종교인 관계 : 『우츠노미야 타로 일기』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56, 2026. https://doi.org/10.25050/jdaos.2026.56.0.257

고병철, 「일제강점기의 종교 지형과 종교 법규」, 『정신문화연구』 40-2, 2017. https://doi.org/10.25024/ksq.40.2.201706.8

_____,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서울: 박문사, 2019.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9 : 3·1운동이후의 민족운동 2』,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권동우, 「'유사종교해산령'의 실체에 관한 연구: '무극도(無極道)'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학』 44-4, 2021. https://doi.org/10.25024/ksq.44.4.202112.41

김순석, 『일제시대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대응』, 서울: 경인문화사, 2003.

김승태, 「무단통치기 조선총독부의 종교정책과 한국 종교계의 동향」,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2017. https://doi.org/10.18021/chk..47.201709.31

김승태 편역,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기독교편, 1910~1945』,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6.

박병훈, 「상주 동학교 김낙세의 하암일기 연구: 동학교 의례를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95, 2024. https://doi.org/10.18399/actako.2024..95.003

박상규, 「무극도 관련 문헌 연구: 비교 및 고증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41, 2022. https://doi.org/10.25050/jdaos.2022.41.0.27

박인규, 「일제강점기 식민당국의 신종교 정책의 추이: '종교유사단체'와 '유사종교' 개념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47, 2024. https://doi.org/10.46263/RC.47.1.

성주현・고병철, 『일제강점기 종교 정책』,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2021.

안유림, 「일제하 기독교 통제법령과 조선기독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_____,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문화연구』 32, 2017. https://doi.org/10.17792/kcs.2017.32..235

오다 쇼고,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박찬승・김민석・최은진・양지혜 옮김, 서울: 민속원, 2018.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新宗教」, 『한국근현대사연구』 13, 2000.

_____,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서울: 경인문화사, 2001.

_____, 「제1차 세계대전과 한국천주교회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9, 2020. https://doi.org/10.15799/kimos.2020..69.001

윤이흠, 『일제의 한국 민족종교 말살책』,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7.

이원섭, 「종교 연구자 와타나베 아키라(渡邊彰)의 저술 활동: 1920년대 초 학무국 종교과 근무 시기를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55, 2025. https://doi.org/10.25050/jdaos.2025.55.0.323

이충호 편역, 『조선통치비화』, 서울: 국학자료원, 2012.

임이랑, 「1920년대 조선총독부 학무국 종교과의 설치와 역할」, 『역사문제연구』 24-2, 2020. https://doi.org/10.36432/CSMKH.44.202010.2

조규태, 「일제강점기 돈암리 이주민 히라야마 마사쥬(平山政十)와 平山牧場」, 『숭실사학』 46, 2021. https://doi.org/10.16942/ssh.2021.46.06.05

《공훈전자사료관》 https://e-gonghun.mpva.go.kr

《국립중앙도서관》 https://www.nl.go.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

Google, Gemini (3.5 Flash, 2026. 05. 19.; 3.0 Flash, 2025. 12. 17.) [대형언어모델] https://gemini.google.com, 영문초록 작성 및 연구에 활용한 문헌을 번역하고 요약하는 데 활용하였음.

■ Abstract

Discrepancies in Imperial Japan's Boundaries of Religion and Criteria for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Perceptions and Policy Responses to the Contrasting Attitudes of Faith Groups Toward the March First Movement

Lee Won-sub
Ph.D. Candidate, Religious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Imperial Japan's legal boundaries between "religion" and "pseudo-religious organizations" (宗教類似團體), based on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diverged from faith groups' actual attitudes toward the 1919 March First Movement and investigates colonial authorities' perceptions and policy responses. Under the *Regulations on Propagation* of 1915, colonial authorities recognized only Shinto, Buddhism, and Christianity as official religions, classifying other indigenous faith-based organizations as "pseudo-religious organizations." Despite post-1919 policy reforms accompanying governance shifts, these legal boundaries remained unaltered. Although authorities perceived unrecognized groups as conflating religion with politics, misleading the public, and pursuing

national independence, they did not employ these traits as absolute criteria for recognition; rather, all faith groups were managed through non-interference, surveillance, or suppression based on public security needs.

Consequently, the contrasting stances toward the movement demonstrated by faith groups with shared roots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Cheondogyo and Sicheongyo’) failed to directly alter legal recognition boundaries. Nevertheless, colonial bureaucrats in charge of religious administration investigated the disparities in participation and their causes for governance purposes. The writings of religious affairs officials and resident Japanese researchers—including Watanabe Akira (渡邊彰), Nakarai Kiyoshi (半井清), and Hirayama Masaju (平山政十)—were the direct outcome of this inquiry. While seeking to improve relations with missionaries, the Government-General distinguished Catholicism from Protestantism by recognizing the former’s compliant stance that “did not confuse religion with politics.” Furthermore, discerning how differently Cheondogyo and Sicheongyo had historically channeled their political aspirations, authorities calibrated the freedom granted for assembly and association, flexibly deploying non-interference, surveillance, or suppression depending on each organization’s conduct.

This evolution of Imperial Japan’s religious perceptions and policy responses demonstrates the necessity of re-examining the historical realities long obscured by the binary framework of “recognized vs. unrecognized religions.”

Keywords: March First Movement, pseudo-religious organizations, recognized and unrecognized religions,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Cheondogyo and Sicheongyo

논문투고일 : 2026.07.25. 심사완료일 : 2026.09.01. 게재확정일 : 2026.09.28.